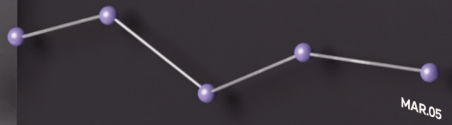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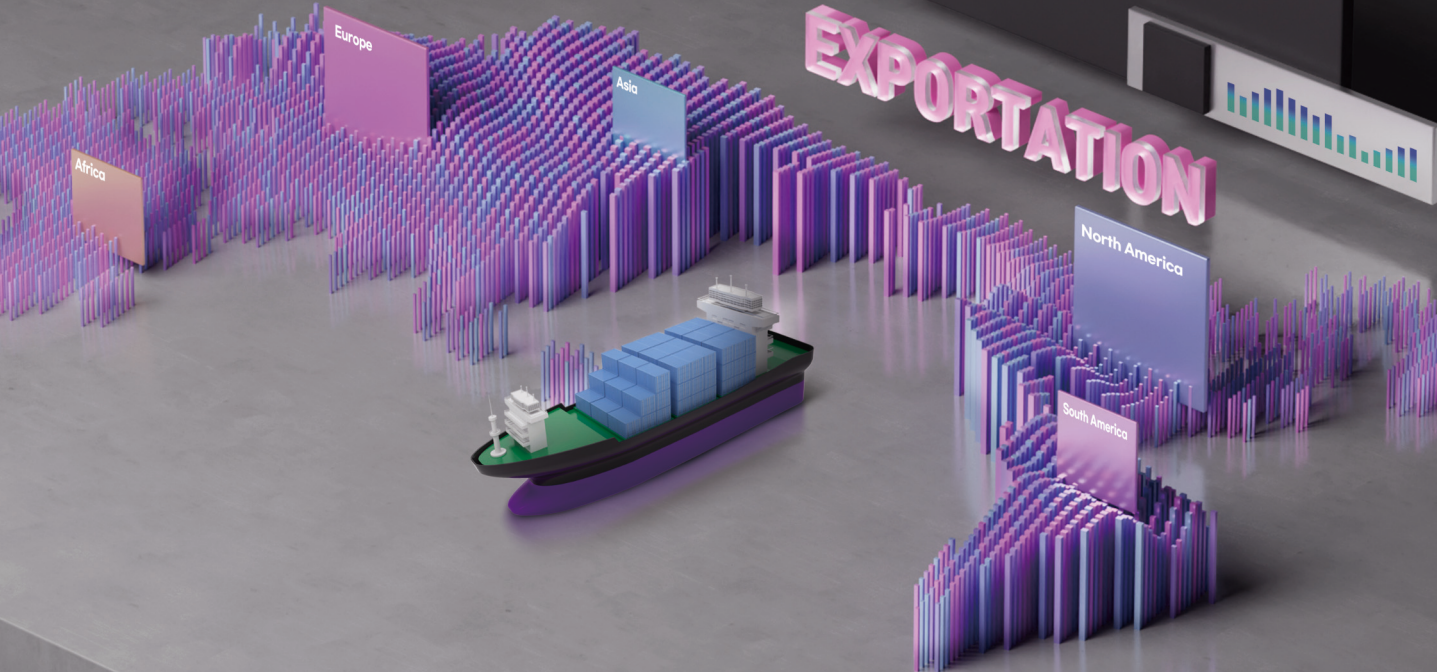
국가별 식품규정에 따른 한국 수출 대응방안



INCREASE IN
EXPORTS



EXPORTATION



높아지는 중국 조제분유 수출 문턱에 대한 해안



꾸준히 성장 중인 영유아 조제분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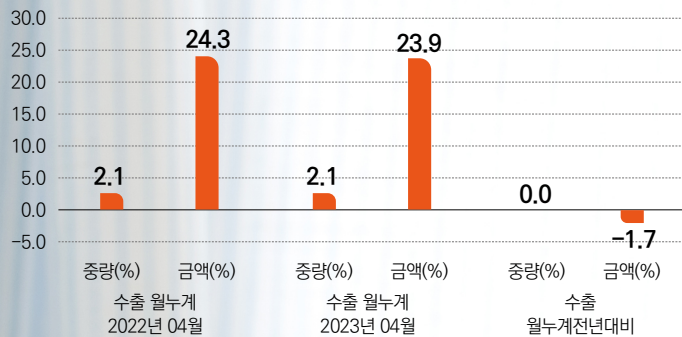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세 자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는 분유 시장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어 영유아 분유 업계에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산 감소세가 뚜렷함에도 영유아 조제분유 시장규모는 오히려 2022년에 1,908.5억 위안에 달하는 등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유 소비층인 영유아 부모들의 가치분소득 증가와 더불어 육아 의식과 방식이 과학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유아 분유 시장은 양적 성장 대신 프리미엄 제품 개발 등 질적 성장으로 변화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 조제분유 대중 수출 현황

한국산 조제분유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은 여전히 분유에 대한 수입제품 의존도가 높은편으로 2022년 수입 규모는 총 265.6천 톤, 4,435.7 백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제품의 대중 수출 추이는 2023년 3월 기준 누적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1,975천 톤, 21,886천 불을 기록하다가 4월 들어 월 누적 전년동기대비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 조제분유 대중 수출 현황

(단위: 1백만\$ / 1천t)



출처: KATI, 카티 통계 자료

2022년 중국 내 조제분유 수입 규모



총 **265.6** 천 톤



4,435.7 백만 달러

비안제(备案制)를 등록제(注册制)로 대체

2016년 10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CFDA)에서는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에 대한 배합등록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여 수입 제품뿐만 아니라 자국산 분유까지 모든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해 제품 등록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법”에 의하면 등록제는 기존의 통보만 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던 비안제와 비교했을 때 분유 제품 배합이 과학적이고 안전하다는 증명을 위해 관련 보고 및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등 제조, 판매 및 수출입의 문턱이 본 제도로 인해 크게 높아졌다. 중국 당국은 엄격한 제도를 통해 자국 내 유통되는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동시에 가격의 비합리적인 인상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개 기업당 3개 브랜드, 9가지 배합 방법 이내로 제한

영유아 조제분유는 3단계로(0~6개월 영아, 6~12개월 영유아, 12~36개월 유아로 정함) 나누어 생산하며 이를 3가지 브랜드로 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합 방법에 있어서 생산 중 1개, 개발 중 1개, 그리고 창의적 조합 1개 총 3개로 각 브랜드에 적용하여 총 9개로 정해진다. 이를 통해 분유 제품 동질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규모가 작고 판매량이 적은 브랜드의 도태와 퇴출을 유도하여 분유 산업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기도 한다.





**새로운 국가표준이
올해 2월부터 실행**

2021년 3월에 발표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아 조제식품(GB 10765-2021)〉,
〈식품안전 국가표준 6~12개월 영아 조제식품(GB 10766-2021)〉,
〈식품안전 국가표준 유아 조제식품(GB 10767-2021)〉이
2023년 2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코트라 해외시장 분석 자료에 의하면, 신규 국가표준에서 포함된 검사항목은
50개 이상이며 이는 유럽(37개), 미국(30개), 일본(27개)보다 많아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표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
역량이 부족한 브랜드는 시장에서 추가로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점차 소수 유력 브랜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등록 유효기간이
5년에 불과**

규정에 따르면 등록 유효기한은 5년으로 정해졌다.
즉, 5년마다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필요한 검사 및
증빙 서류 제출을 반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비용과 소요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신규와 재등록 구분 없이 등록과 심사 자체로
수출 문턱이 높아져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라벨 표시 규범화

현재 영유아 조제분유의 라벨에는 제품명칭, 배합표, 영양성분표, 규격, 등록번호,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원산국, 섭취량 또는 섭취방법, 생산업체 혹은 재중책임회사, 저장방식, 생산공정(업체) CNCA등록번호, 모유 관련 문구와 간략한 설명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허위·과장 표현 및 과학 원칙을 위반하거나 효능 및 기능상 “무첨가, 미포함”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은 엄격히 금지된다.
나아가 모호한 정보의 표기가 금지되며 특히 “지능 계발, 면역력 강화, 위장 보호” 등의 표현은 적시할 수 없고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또한 불가하다.

< 조제분유 라벨 필수적 표시 항목 >

제품명칭, 배합표, 영양성분표, 규격, 등록번호,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원산국, 섭취량 또는 섭취방법, 생산업체 혹은 재중책임회사, 저장방식, 생산공정(업체) CNCA등록번호, 모유 관련 문구 간략한 설명

< 조제분유 라벨 금지 표시 항목 >

효능 및 기능상 “무첨가, 미포함”
모호한 정보
“지능 계발, 면역력 강화, 위장 보호” 등의 표현



Insight

중국 조제분유의 주요 구매층인 젊은 부모들의 소득 수준 제고와 육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에 따라 분유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급 분유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할 것이며, 중국의 분유에 관한 관리 표준과 감독이 꾸준히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고품질 분유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조제분유의 대중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각종 리스크를 적시에 예상하고, 실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 현지화 지원사업 등 유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또한 프리미엄 조제분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조제분유 기업들은 제품 품질,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우월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동향 및 영향



할랄의 정의

할랄(حلال, Halal)은 '허용되다'는 뜻의 아랍어로 샤리아(Sharia, 이슬람율법)에 따라 허가된 것을 의미하며, 식품 자체뿐 아니라 행동·장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할랄의 반대인 하람(حرام, Haram)은 '금지되는 것'/'불법적인 것'을 의미하며 할랄과 마찬가지로 행동·장소에도 적용된다.

할랄 (Halal) 식품

- 신선농산물, 유제품, 생선
- 밀, 쌀, 호밀 등 곡물류
- 이슬람율법에 따라 도축된 육류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닭, 오리 등)

* 하람이 아닌 식품 중 할랄인증을 받은 식품

하람 (Haram) 식품

-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 술 등 알코올
- 피와 그 부산물
- 파충류와 곤충류
- 동물의 사체, 도축 전에 죽은 동물
- 이슬람율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할랄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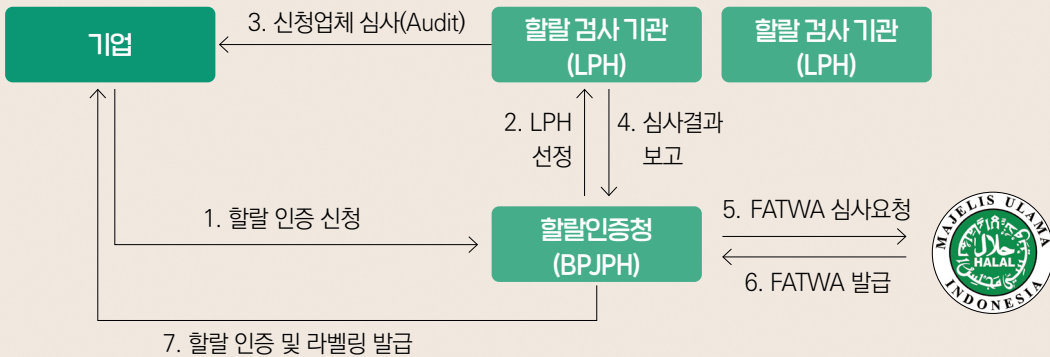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정책 추진 경과

〈할랄보장법〉은 제정('14.10) 후, 대외 협의 부족 등 준비 지연으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을 5년 이상 유예키로 결정('19.4)했다.
할랄인증청(BPJPH)을 신설('17.10)하여
종교부(MORA :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의 외청 형태로서,
할랄 관련 정책 수립, 인증 발급, 관련 기관 인가,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당초)
'19.10. 시행

(변경)
'24.10. 이후
단계적 시행
(식품은 '24년 10월 시행)

할랄인증청(BPJPH) 설립 이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할랄보장법 주요 내용

2024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인증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별도의 비할랄인증 제품 표기를 하고 수입해야 한다.
할랄인증 기능을 하는 민간기관(MUI)에서 정부 산하 기관(BPJPH)으로 변경되었으며,
MUI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종료 3개월 전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신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기존 MUI 할랄인증 유효기간은 2년,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서 할랄 매대와 비할랄 매대를 구분해 판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및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교차인증을 허용하며,
할랄인증청(BPJPH)이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이 별도의 등록 과정만 거치면 된다.

* 한국 2개 할랄인증기관 교차인증 신청(한국이슬람교 KMF, 할랄인증원 KHA)





인도네시아 신규 할랄 로고

2022년 2월 10일 시행규칙 40호에 의거하여 인도네시아 할랄 신규 로고를 발표했다. 2022년 3월 1일에는 신규 로고 사용이 적용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에 신규제품 등록 신청 시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만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등록 허가 제품의 MUI 로고 부착 제품은 2026년 2월까지 사용을 허가하며, 할랄 로고 표기 방식은 로고 외곽 틀 안에 ID로 시작되는 인증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포장 디자인의 배경색에 조화를 맞추기 위하여 보라색 외 흰색과 검정으로 표기해야 한다.



기존 할랄로고(MUI)



신규 할랄로고(BPJPH)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규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작한 Indonesia Halal Market Report 2021/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규모는 1,840억 달러로 전 세계 4위 규모(전 세계 할랄 소비 11.3% 차지)이다. 할랄 산업 관련 모든 분야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3%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할랄 산업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1,350억 달러이며, 2020년~2025년 연평균 성장률은 14.6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규모

(단위: 십억달러, %)

분 야	2020년 규모	2020~2025 연평균 성장률	2019~2020 성장률
식 품	135.0	14.6	-6.4
패 션	15.6	8.3	-5.0
제 약	5.1	5.8	-4.3
화장품	4.2	12.6	0.7
미디어	20.7	9.0	-4.7
관 광	3.4	19.0	-70.0

출처: Indonesia Halal Report, 2021/2022

Insight

2024년 10월 17일 예고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이후 한국식품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별도의 비할랄인증 제품 표기를 하고 수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유통매장에서 할랄인증 제품과 비할랄인증 제품이 섞여서 진열 판매되고 있으나, 2024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제품과 비할랄제품을 분리 진열 후 판매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주류 시장 진입 확대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교차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할랄인증기관 교차인증 지원이 필요하다. * 2개 국내 할랄인증기관 교차인증 신청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비무슬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시장 반응을 확인해야 하며, 주류 시장 진입 확대 필요시 교차인증을 받은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 취득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보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향이 있어 향후 마케팅 차원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취득 후 수출 검토가 필요하다.



SPECIAL

France



파리지사

유럽 복합식품 규정 및 대표적인 한국발 수출애로 품목

FOOD

SAFETY

유럽연합의 식품안전규정

유럽연합(EU)의 식품안전규정은 세계적으로 엄격하다고 손꼽히는 품질과 식품안전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EU의 식품규정은 식품안전, 동식물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여러 지표들을 반영하여 꾸준하고 활발하게 개정되고 있다.

EU의 식품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EU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수입되는 식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한국산 식품 수출에 큰 영향을 준 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합식품규정 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EU 복합식품 규정에 해당하는 한국 식품은?

EU 규정 내 '복합식품'의 정의는 동물유래 가공식품(PPAO, Process Product of Animal Origin)과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형태의 식품이다. 한국산 식품 중 복합식품에 해당하는 대표품목으로는 액젓이 함유된 김치, 사골/해물 등 스프 함유라면, 크림성분 함유 즉석떡볶이, 유제품 함유 초콜릿, 계란성분 함유 비스킷, 버터 및 꿀 함유 건과류, 육류/해물 함유 냉동만두, 핫도그 등 매우 다양하다.

복합식품의 정의에서 명시한 동물유래 가공식품(PPAO)이란 육류, 우유, 계란을 포함한 알류, 꿀, 수산물 등의 동물유래 재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공식품이다.

즉석 사골국물, 치즈, 난백분, 프로폴리스, 액젓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식물성 재료가 사용되었으나 동물유래 재료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경우도

최종제품은 동물유래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예로 올리브유에 절인 통조림 참치, 한약재가 들어간 레토르트 삼계탕이 있다.

젤라틴, 콜라겐, 카제인 등 고도로 정제되었으나

원재료가 동물로부터 유래한 재료도 동물유래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복합식품(동물유래 가공식품 + 식물성 재료) 해당 HS 코드

아래 25개의 HS코드로 EU에 수입되는 제품들은 EU 복합식품 규정 적용을 받으며, 라면, 냉동만두, 김치, 장류, 제빵제과류, 음료류, 아이스크림, 주류 등이 포함된다.

EU 복합식품 규정 해당 25개 품목

(2023.05.04. 기준)

HS코드	품 목	HS코드	품 목
1517	유지류 혼합 및 조제식품	1905	제빵제과류
1518	유지류 및 이들의 화학적 변성 가공식품	2001	초절임한 채소, 과일, 건과류
1601 00	소시지	2004	냉동 채소
1602	육류 및 곤충	2005	초절임, 냉동 이외 조제, 보존처리 채소
1603 00	육류 및 수산물 추출물	2008	조제, 보존처리한 과일, 건과류
1604	조제, 보존처리한 어류 및 어란	2101	커피 및 차류, 그 추출물 및 조제품, 대용물
1605	조제, 보존처리한 갑각류 및 연체동물	2103	소스류, 조제 혼합 조미료, 겨자
1702	당류, 시럽 등 감미료	2104	스프류
1704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견, 캔디류	2105 00	아이스크림, 빙과류
1806	초콜릿, 코코아 함유 조제식품	2106	기타 조제식품 (두부, 김, 인삼류 등)
1901	맥아추출물 및 유제품 조제식품	2202	물, 과채주스 이외 알코올 미첨가 음료류
1902	파스타 및 면류	2208	주류
1904	가열 등 사전조리한 곡물 조제식품		

복합식품의 3가지 카테고리

한국산 식품에 사용가능한 동물유래재료

2021년 4월에 개정된 복합식품 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함유량이 아닌, 해당 식품의 보관조건과 육류 함유 여부에 따라 규정 적용 조건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합식품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비상온
(냉동/냉장)
보관
복합식품

상온 보관
육류 함유
복합식품

상온 보관
육류 미함유
복합식품

EU수출용 한국산 식품에 사용 가능한 동물유래재료 및 사용조건

	비상온(냉동/ 냉장) 보관	상온 보관 육류 함유	상온 보관 육류 미함유
육류 (소, 돼지, 닭 등)	사용 불가	사용 불가 * 육류를 함유한 복합식품은 EU로 수출 불가	-
수산물	한국산 사용 가능		한국산 사용 가능
젤라틴, 콜라겐 등	한국산 사용 가능		한국산 사용 가능
유제품	사용 불가	-	한국산 사용 불가
달걀	한국산 사용 불가		한국산 사용 불가
꿀	한국산 사용 불가		한국산 사용 불가
곤충	한국산 사용 가능		한국산 사용 가능

* 2023.05.04. 기준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

2006년부터 시행 중인 EU 식품규정에 따라, 본래 EU 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사용되는 동물유래 재료는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021년 4월 복합식품 규정이 개정되어, 이제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모든 식품에 사용된 동물유래 재료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개정 초반에는 주재료 중 동물유래 가공식품의 원산지와 EU 승인시설 생산 여부 정도만 확인하던 수준의 국경검역이 최근 들어 위험감각처리 조건이나 1차 원재료의 규정 준수 여부까지 확인을 요하는 원칙적인 적용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EU로 수입되는 식품 중 육류 유래 재료를 함유하는 경우, 최종제품 생산국 담당관청(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역증명서를 화물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한국은 검역증명서 발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나 함유량에 상관없이 육류(소, 돼지, 닭 등)를 함유한 한국산 식품은 EU 수출이 불가하다.

현재 EU 수입조건(①EU 승인국, ②EU 승인시설, ③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승인)을 모두 충족하는 한국산 동물유래 재료는 수산물과 젤라틴·콜라겐, 곤충뿐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산물 유래 재료에 대해서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EU 승인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의 제조공정도를 비롯하여 생산·가공시설의 도면, 용수배관 배치도, 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HACCP 이행계획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며, 한국 측의 등록증 교부까지는 15일 정도 소요되나, EU 측의 최종 승인까지는 소요 기간을 예측하기 힘들다.

한편, EU 수출용 한국산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식품의 경우,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수출어로 품목

김치

김치는 2021년 4월 복합식품 개정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품목이었다.

기존에는 액젓 함유량이 미미하여 동물유래 재료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냉장 보관을 요하는 김치가 개정으로 인한 가장 강력한 조건 적용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치에 사용되는 액젓은 ①EU 승인국의 ②EU 승인시설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화물에는 ③식약처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한다.

2021년 4월 당시, EU의 수입조건을 충족하는 액젓 생산시설은 CJ와 대상, 단 두 곳뿐이었다.

EU 승인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HACCP 혹은 그에 준하는 위생·안전관리 조건과 EU 식품규정에서 요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동물유래 재료를 함유한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예: 젓갈 함유 김치)에 요구되는 검역증명서 발급은 생산·수출업체 관할 지방 식약청을 통해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신고 관련 서류를 비롯하여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식품 검사성적서, 동물유래 가공식품별 원산지 및 생산시설 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현재는 수산물 가공식품을 함유한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한해서만 검역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2023년 연초부터 EU 국경검역에서 액젓뿐만 아니라 액젓의 재료로 사용되는 1차 원재료의 원산국과 EU 승인시설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검역 현장에서 규정의 원칙 적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김치를 수출 중이거나 준비하는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면

작년부터 EU로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류(HS코드 1902 30 10)에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농약에 대한 일시 검역강화조치가 적용 중이다. 따라서, EU로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각 생산로트당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성적서를 포함한 식약처 발급 공식증명서를 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올해 7월 이후부터 해당 조건 완화 예정)

이와 별도로, 라면 또한 개정된 복합식품 규정에 따라, 분말 및 건더기 스프에 들어가는 수산물 유래 재료의 생산·가공시설은 EU 승인시설이어야 한다.

특히, 유제품을 함유한 라면류(까르보나라맛 등)는 EU 국경검역 시

- ①원산지 및 ②EU 승인시설 여부뿐만 아니라
- ③위험경감처리 조건(Fo 값 30이상의 멸균처리, 135 이상의 초고온(UHT) 처리)까지 확인하므로, 사용된 동물유래 재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유제품, 계란, 벌꿀 가공품 함유 제빵제과 및 음료류

현재, 한국산 유제품, 계란, 벌꿀을 함유한 식품은 EU로 수출이 불가하다. 단, 상온보관 복합식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유제품, 계란, 벌꿀 가공식품의 사용은 가능하다. 이때, 유제품과 계란 가공식품은 각각 위험감감처리를 거친 제품이어야 통관 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수급처를 통해 해당 재료의 원산지, 제조공정, 생산시설의 EU 승인번호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둘 것을 권고한다.



Insight

EU 식품규정은 식품안전, 동식물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여러 지표들을 반영하여 꾸준히 활발하게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진출을 계획하는 수출업체들은 제품기획 단계에서부터 EU의 식품규정 및 수입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발주 전에 수입업체 또는 통관대행사 등을 통해 수출시점 기준의 EU 수입조건을 재차 확인해야 EU 수입신고 및 국경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EU 수입이 승인되지 않은 한국산 우유·계란·벌꿀 등의 동물유래 재료에 대해 EU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유래 재료 사용이 거의 수산물로 한정되어 현재의 조건에서는 수출품목 다양화는 물론 수출량 증대에도 한계가 있으며, 벌꿀을 함유한 가공품 같은 경우는 제3국산 제품 수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들도 원가 등을 이유로 EU 조건에 맞는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중소기업들에게는 EU 식품규정 자체가 커다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산 동물유래 재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미승인 재료에 대한 EU 승인국 지위 획득,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승인 획득 등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